



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namwon.go.kr

제19호 2018. 4. 20(금)

| | |
|--------|-------|
| 선 람 | 기관의 장 |
| | |

고시

○남원시 고시 제2018- 46호 사도개설 허가내용 고시 ----- 1

공고

- 남원시 공고 제2018-707호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 ----- 2
- 남원시 공고 제2018-708호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 인가전 열람공고 ----- 9
- 남원시 공고 제2018-715호 남원시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(안) 입법예고 공고 ----- 15

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
| 회 람 |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

남원시청 고시 제2018 - 46호

사도개설 허가내용 고시

「사도법」 제4조에 의하여 사도개설 허가가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1. 사업위치 : 남원시 아영면 아곡리 784-2번지 외 1필지
2. 사업목적 : 농로 개설에 따른 진·출입로를 위한 사도 개설
3. 공사개요 : 연장 L=103.0m, 폭 B=4.0m (Con`c 포장)
4. 공사시행기간 : 2018. 04. ~ 2019. 04.
5. 공사실시방법 : 토목공사 일반시방서에 의거 실시
6. 허가기관 : 남원시청
7. 허가년월일 : 2018. 04. 17.
8. 피허가자의 주소·성명 : 오양훈(전주시 덕진구 호성로 136, 208동 301호)
9. 기타사항 : 사도설치 허가사항 조건에 준함

2018년 4월 20일

남 원 시 장

남원시 공고 제2018-707호

「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남 원 시 장

2018. 04. 17.

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「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」 제9조2(근로자 전입정 착금 지원)를 운영함에 있어, 남원시 기업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인구 유입과 근로자의 정착 지원을 촉진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범위 확대 및 지급방법 규정 (안 제9조의2)

-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 근로자에서 기업 근로자로 확대
-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을 규정 : 2년 → 2년까지 월별로 분할 지급

3. 입법예고기간 : 2018. 4. 17 ~ 5. 8(21일간)

4. 의견제출

가. 의견제출사항 : 별지 의견제출서 참조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과 반대 의견과 그 이유)
-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나. 제출방법 : 서면, 팩스(063-620-6712) 및 직접방문

다. 접 수 처 : 우 55738 / 남원시 시청로 60 3층 남원시청 경제과

5. 기타사항

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경제과(063-620-635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의견제출서 1부.

2.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.

의견제출서

| | | |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1. 의견제출 목록 |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| | |
| 2. 제출자 | 성명(명칭) | | |
| | 주 소 | | |
| 3. 의 견 | | | |
| 4. 기 타 | | | |

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(의견제출 및 처리)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18년 월 일

의견서 제출인 주 소 :

성 명 :

(서명 또는 인)

전 화 :

남원시장 귀하

| | |
|-----|---|
| 비 고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. 2.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 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|-----|---|

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|
| 의안 번호 | |
|----------|--|

제출년월일 : 2018. 4. .
제 출 자 : 남 원 시 장
제안설명자 : 경 제 과 장

1. 개정이유

- 「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」 제9조2(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)를 운영함에 있어, 남원시 기업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인구유입과 근로자의 정착 지원을 촉진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범위 확대 및 지급방법 규정 (안 제9조의2)
 -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 근로자에서 기업 근로자로 확대
 -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을 규정 : 2년 → 2년까지 월별로 분할 지급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: 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
- 나. 그 밖의 사항
 - 1) 입법예고
 - 기 간 : 2018. 4. 17. ~ 2018. 5. 8.(21일간)
 - 결 과 :
 - 2) 비용추계서 : 불임자료 참조
 - 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비대상

남원시 조례 제 호

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2제1항 중 “중소기업”을 “기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매월 본인”을 “본인”으로, “2년까지”를 “2년까지 월별로 분할하여”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|
| <p>제9조의2(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) ① 시장은 관내 <u>중소기업</u>에 근로를 목적으로 전입한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입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전입정착금은 거주기간과 근로기간이 모두 1년이 경과한 때부터 <u>매월 본인의</u>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, 최초 지급일부터 <u>2년까지</u> 지원한다.</p> <p>④·⑤ (생략)</p> | <p>제9조의2(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) ① ----- <u>기업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</p> <p>-----</p> <p>-- <u>본인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<u>2년까지 월별로 분할하여</u> --.</p> <p>④·⑤ (현행과 같음)</p> |

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○ 비용발생요인

- 지원대상을 중소기업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했으나,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기업 근로자 중 “2명 이상이 세대나 가구를 구성하고 기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매월 10만원씩 2년간 지급” 함에 따라 대상자 확대에 따라 비용 증가 예상

○ 관련조문

-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조례 제9조의2

2. 비용 추계결과

○ 연간 예산 : 60백만원

- 전입 정착금 지원 : 60백만원 / 2018년도 30백만원

○ 연도별 예산

- 2018년 : 30백만원(기 예산확보)
- 2019년 : 60백만원
- 2020년 : 60백만원
- 2021년 : 60백만원
- 2022년 : 60백만원

3. 재원 조달 방안

○ 재원조달계획

- 일반회계 예산확보

4. 그 밖의 사항

1. 부대의견
2. 협의사항
3. 참여자 및 작성자

[별지 제2호서식]

〈연도별 비용 추계표〉

(단위 : 천원)

| 구 분 | 1차년도 (2018년) | 2차년도 (2019년) | 3차년도 (2020년) | 4차년도 (2021년) | 5차년도 (2022년) | 계 |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세 입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
| 세 출 | 30,000 | 60,000 | 60,000 | 60,000 | 60,000 | 270,000 | |
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
| 재원 조달 | | | | | | | |
| 의존 재원 | 소 계 | 30,000 | 60,000 | 60,000 | 60,000 | 60,000 | 270,000 |
| | 보 조 금 | | | | | | |
| | 지방교부세 | | | | | | |
| | 시 비 | 30,000 | 60,000 | 60,000 | 60,000 | 60,000 | 270,000 |
| 자체 수입 | 소 계 | | | | | | |
| | 지 방 세 | | | | | | |
| | 세외수입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
| 지 방 채 | | | | | | | |
| 기 금 | | | | | | | |
| 공기업 특별회계 | | | | | | | |
| 기 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 | | | | | | | |

남원시 공고 제2018-708호

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 인가전 열람공고

남원 도시계획시설(도로)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 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 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같은법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·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남 원 시 장

2018년 4월 20일

1. 사업의 종류 : 남원 도시계획시설사업(도로)
2. 사업의 명칭 및 시행지의 위치, 사업의 규모

| 사업명 | 위치 | 시설명 | 등급 | 노선번호 | 사업구간 | 사업량 | 착수일 | 시행청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|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|
| | | | | | | | 준공예정일 | | |
| 동충5통 소로 개설공사 | 남원시 동충동 | 도로 | 소로 | 2-43 | 동충동 29-1 ~ 동충동 2-3 | L=87m B=8m | 2018. 5 2018. 9 | 남원시 | |
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가. 성명 : 남원시장

나. 주소 :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

4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: 별첨

5. 열람기간 : 도보게재 익일부터 14일간

6. 열람장소 : 남원시청 도시과(063-620-6463)

7. 관계 도서는 남원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끝.

□ 물 건 조 서

| 번호 | 소재지 | 지번 | 물건명 | 상황 및 구조 | 편입수량 | | 소유자 | |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| | | 비고 |
|----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|----|------|----|
| | | | | | | | 주소 | 성명 | 주소 | 성명 | 권리명세 | |
| 1 | 동충 | 29-1 29-7 | 작업장1 | 블록 슬레이트지붕 (셔터포함) | 18.72 | m ² | | | | | | |
| | | | 작업장2 | 철파이프 강판지붕 | 22.05 | m ² | | | | | | |
| | | | 바닥포장 | 블록 | 17.50 | m ² | | | | | | |
| | | | 담장 | 블록 | 1 | 식 | | | | | | |
| | | | 강판 | 지주대 포함 | 2 | 식 | | | | | | |
| 소계 | | | 5건 | | | | | 남원시 | | | | |
| 2 | 동충 | 28 28-4 | 주택 | 샌드위치 판넬 | 43.20 | m ² | | | | | | |
| | | | 작업장 | 철파이프강판 지붕(보수비 포함) | 20.00 | m ² | | | | | | |
| | | | 콘테이너 이설 | | 1 | 식 | | | | | | |
| | | | 동산이전 비 | | 1 | 식 | | | | | | |
| | | | CCTV | | 1 | 식 | | | | | | |
| | | | 담장 | | 7 | m | | | | | | |
| | | | 간판 | | 3 | 식 | | | | | | |
| | | | 바닥포장 | | 40.00 | m ² | | | | | | |
| 소계 | | | 8건 | | | | | 남원시 | | | | |
| 3 | 동충 | 28-3 28-6 | 바닥포장 | 콘크리트 | 37.4 | m ² | | | | | | |
| 소계 | | | 1건 | | | | | 남원시 | | | | |

| 번호 | 소재지 | 지번 | 물건명 | 상황 및 구조 | 편입수량 | | 소유자 | |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| | | 비고 |
|----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|----|------|----|
| | | | | | | | 주소 | 성명 | 주소 | 성명 | 권리명세 | |
| 4 | 동충 | 28-2 28-5 | 헨스 | | 10.5 | m | | | | | | |
| | | | 바닥포장 | | 15.50 | m ² | | | | | | |
| | | | 화단 | | 2 | 식 | | | | | | |
| | | | 백일홍 | | 1 | 주 | | | | | | |
| | | | 호랑가시 나무 | | 1 | 주 | | | | | | |
| | | | 철쭉 | | 7 | 주 | | | | | | |
| 소계 | | | 6건 | | | | 남원시 월락동 464-8 | 시재근 | | | | |
| 5 | 동충 | 1-6 | 주택(방1, 방2, 주방) | 목조기와 강판지붕 | 56.50 | m ² | | | | | | |
| | | | 주택(방3) | 조적조 강판지붕 | 8.88 | m ² | | | | | | |
| | | | 주택(방4) | 조적도 강판지붕 | 7.35 | m ² | | | | | | |
| | | | 창고(서 터포함) | 조적조슬라브 지붕 | 15.00 | m ² | | | | | | |
| | | | 화장실 | 조적조 강판지붕 | 3.38 | m ² | | | | | | |
| | | | 현관 및 거실 | | 8.33 | m ² | | | | | | |
| | | | 담장 | 10m | 1 | 식 | | | | | | |
| | | | 계단 | | 1 | 식 | | | | | | |
| | | | 대문 | | 1 | 식 | | | | | | |
| | | | 수돗간 | | 1 | 식 | | | | | | |
| 소계 | | | 10건 | | | | | 남원시 | | | | |

| 번호 | 소재지 | 지번 | 물건명 | 상황 및 구조 | 편입수량 | | 소유자 | |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| | | 비고 |
|----|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|----|------|----|
| | | | | | | | 주소 | 성명 | 주소 | 성명 | 권리명세 | |
| 6 | 동충 | 3-1 3-7 | 대문 | | 1 | 식 | | | | | | |
| | | | 계사 | | 1 | 식 | | | | | | |
| | | | 바닥포장 | | 3.00 | m ² | | | | | | |
| | | | 무화과 나무 | | 1 | 주 | | | | | | |
| | | | 주목 | | 1 | 주 | | | | | | |
| | | | 철쭉 | | 5 | 주 | | | | | | |
| 소계 | | | 6건 | | | | | 남원시 | | | | |
| 7 | 동충 | 2-4 | 주택1(심 야보일러 포함) | 목조강판지붕 | 63.00 | m ² | | | | | | |
| | | | 화장실 | | 1 | 식 | | | | | | |
| | | | 주택2 | | 21.6 | m ² | | | | | | |
| | | | 현관(까 대기) | | 14.00 | m ² | | | | | | |
| | | | 다용도실 1 | | 2.52 | m ² | | | | | | |
| | | | 다용도실 2 | | 11.55 | m ² | | | | | | |
| | | | 화장실 및 창고 | | 8.64 | m ² | | | | | | |
| | | | 대문 | | 1 | 식 | | | | | | |
| 소계 | | | 7건 | | | | | 남원시 | | | | |

| 번호 | 소재지 | 지번 | 물건명 | 상황 및 구조 | 편입수량 | | 소유자 | |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| | | 비고 |
|----|-----|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|----|------|----|
| | | | | | | | 주소 | 성명 | 주소 | 성명 | 권리명세 | |
| 8 | 동충 | 2-1 | 바닥포장 | 콘크리트 | 18.06 | m ² | | | | | | |
| 소계 | | | 1건 | | | | | 남원시 | | | | |
| 9 | 동충 | 1-3 | 화장실 및 세면장 | 조적조 강판지붕 | 10.08 | m ² | | | | | | |
| | | | 까대기 | 목조 강판지붕 | 9.00 | m ² | | | | | | |
| | | | 담장 | | 10.0 | m | | | | | | |
| | | | 수돗간 | | 1 | 식 | | | | | | |
| | | | 장독대 | | 1 | 식 | | | | | | |
| | | | 대문 | | 1 | 식 | | | | | | |
| | | | 화단 | | 1 | 식 | | | | | | |
| | | | 대추나무 | | 1 | 주 | | | | | | |
| | | | 라일락 | | 1 | 주 | | | | | | |
| | | | 남천 | | 2 | 주 | | | | | | |
| | | | 관정 | 모터포함 | 1 | 식 | | | | | | |
| 소계 | | | 11건 | | | |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72 310동 802호 | 심상보 | | | | |

남원시 공고 제2018-715호

남원시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안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남 원 시 장

2018. 04. 20.

남원시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(안) 입법 예고

1. 규칙명 : 남원시 자체감사 규칙
2. 입법예고 기간 : 2018.4.20~2018. 5.10(21일간)
3. 의견제출 : 남원시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5월 10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4. 의견 제출할 곳 : 우 55738 /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감사실
전화 063-620-6022 / E-mail : hong8202@korea.kr
5. 의견 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직접방문, 컴퓨터 통신 등 가능
6.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감사실(063-620-6022)로 문의

붙임 : 남원시 자체감사규칙 일부 개정안 1부

의견제출서

| | | |
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의견제출 목록 | | 남원시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(안) |
| 2. 제출자 | 성명(명칭) | |
| | 주 소 | |
| 3. 의 견 | | |
| 4. 기 타 | | |

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(의견제출 및 처리)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18년 월 일

의견서 제출인 주 소 :

성 명 :

(서명 또는 인)

전 화 :

남원시장 귀하

비 고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.
2.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남원시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| | |
|----------|--|
| 의안 번호 | |
|----------|--|

제출연월일 : 2018. 04. .

제 출 자 : 남 원 시 장

제안설명자 : 감 사 실 장

1. 개정이유

국민권익위원회에서 “지방의회 예산집행의 사후관리 강화 방안”을 의결하고 (2018. 03. 26)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「남원시 자체감사 규칙」의 감사대상기관에 의회사무국이 포함되도록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감사대상기관 추가 (안 제2조)

- “의회사무국” 추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

“지방의회 예산집행의 사후관리 강화”제도개선 권고 공문

(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-607, 2018. 03. 30.)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간 : 2018. 04. 20. ~ 2018. 05. 10.(21일간)

- 결 과 :

다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라. 성별영향분석평가 :

남원시 규칙 제 호

남원시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남원시 자체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1호 중 “읍·면·동”을 “의회사무국, 읍·면·동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|
| <p>제2조(적용범위) 남원시장(이하 “시장”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기관(이하 “감사대상기관”이라 한다)에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>1. 남원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본청, 직속기관 및 사업소, 읍·면·동</p> <p>2. 3. (생략)</p> | <p>제2조(적용범위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-----</p> <p>----- 의</p> <p><u>회사무국, 읍·면·동</u></p> <p>2. 3. (현행과 같음)</p> |